

요약

2022년 이후 재무건전성 문제가 발생한 일본 소액단기보험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잇따랐음. 일본은 소액단기보험시장의 낮은 진입장벽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였지만 이후 진입요건 구체화 및 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. 이에 2023년 4월, 금융청은 소액단기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지침개정을 시행하고 관리 체제를 강화함.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는 조기경고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제 내용을 구체화함

- 일본에서는 2022년 이후 재무건전성 문제가 발생한 소액단기보험¹⁾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잇따랐음²⁾
 - 재무건전성이 낮은 소형 소액단기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금 지불 문제, 사업계획의 실효성 문제 등이 발생함
 - 저스트인케이스의 코로나보험의 경우 2022년 3월 수입보험료는 3,000만 엔이었으나 지급보험금은 1억 8,000만 엔으로 나타내자 기존 계약의 지급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함³⁾
 - 핏베스트 소액단기보험은 보험금 지급 지연 4,080건(약 2억 엔) 등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함
 - 어린이용 소액단기보험회사인 유어사이드 소액단기보험은 신규 계약 건수가 거의 없고, 유동자산 고갈로 인해 사업 존속이 어려워짐
 - 일본 재무국은 부실경영으로 인해 보험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소액단기보험회사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림
 - 2022년 6월 관동재무국은 코로나보험 관련 보험인수 리스크 관리의 미비함을 지적하며 보험스타트업인 저스트인케이스에 업무개선 명령을 내림
 - 2022년 8월 핏베스트 소액단기보험은 2개월간 업무 정지 명령을 받고 최종적으로 2023년 파산 결정을 받았으며, 2022년 12월 유어사이드 소액단기보험은 영업개시 1년 만에 재무국이 등록취소를 결정함
- 일본은 소액단기보험시장의 낮은 진입장벽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였지만, 이후 자금조달 방안 등 진입요건 구체화 및 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
 - 소액단기보험업 진입규제, 경영, 상품심사 등⁴⁾이 일반 보험업과 달라 소액단기보험시장으로의 진입이 쉬움

1) 일본 소액단기보험은 2006년 4월 보험업법 개정 후 등장한 보험업태로 소액의 보험금(질병 및 사망보험금 300만 엔 이하, 손해보험금 1,000만엔 이하 등), 단기(만기 생보·의료보험 1년 이내, 손보 2년 이내)의 보험계약을 말함

2) 日本經濟新聞(2023. 2. 15), “金融庁、ミニ保険会社へ監督強化 成長市場の緩みに先手”

3) ニッセイ基礎研究所(2022. 9. 1), “新型コロナと少額短期保険”

4) 日本少額短期保険協会, “少額短期保険業とは”

- 금융청에 의한 면허제인 기존 보험회사와는 달리 최저자본금 1,000만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재무국에 의한 등록만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하며, 상품심사의 경우 일반 보험업은 인가제이나 소액단기보험업은 사전신고제임
 - 2010년도 말 66개 사였던 소액단기보험회사 수는 2022년 기준 120개 사가 되었고, 수입보험료는 2018년 기준 1,032억 엔에서 2022년 1,346억 엔으로 성장함⁵⁾
 - 금융청에서는 ‘2022년 보험 모니터링 리포트’⁶⁾에서 소액단기보험업자의 재무건전성 및 업무 적절성 확보 문제를 제기하며 모니터링 방식의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
 - 금융청은 재무건전성이 우려되는 소액단기보험업자 조기 파악 필요성을 제기하고 소액단기보험업자 대상의 리스크 관리 상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함
 - 소액단기보험업자의 보험료, 책임준비금 및 향후 수익성 등에 대해 보험계리사와 논의를 진행함
- 이에 2023년 4월, 금융청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통한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소액단기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지침 개정안⁷⁾을 시행하여 등록심사 및 관리 체제를 강화함
- 소액단기보험업 감독에 있어서의 평가 항목, 재무건전성, 책임준비금 적립의 적절성, 사업방법서 등의 개정을 통해 경영체제 확충 및 자금 확보를 촉구하는 등 진입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, 2023년 4월 1일부터 개정안을 적용함
 - 소액단기보험업 등록 희망자는 재무국 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정보연계를 통한 심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함
 -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중 유동성 리스크 관리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요구하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됨
 - 특히 업무 지속을 위한 자금 확보 방안으로 모회사, 개인 오피스 등 주요 주주 등으로부터 약 6개월간의 사업비 상당액 정도의 확실한 자금조달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됨
-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는 조기경고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제 내용을 구체화함
- 조기 경고 제도의 경우 자료 제출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새롭게 소액단기보험업자를 추가함
 - 현금 및 예금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자금조달에 우려가 있는 경우, 순자산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, 지급여력비율이 200%⁸⁾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, 보험계리사가 의견서에 문제를 제기한 경우 등의 기준을 제시함
 - 자금조달 관리부서 설립, 자금조달 관리에 대한 정책 기획 및 지휘명령 체제 정비, 유동성 리스크 관리 방침 수립 등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됨
 -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한도 설정 및 준수 상황 확인, 유동성에 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, 유동성 위기 대응책의 설정 및 재검토 등의 관리를 포함해야 함

5) 日本少額短期保険協会(2023. 7. 6), “2022年少額短期保険業界決算概況について”

6) 金融庁(2022. 9. 30), “「2022年 保険モニタリングレポート」の公表について”

7) 金融庁(2023. 3. 31), “「保険会社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(別冊)(少額短期保険業者向けの監督指針)」の一部改正(案)に対するパブリックコメントの結果等について”

8) 국내 지급여력비율 100%에 해당함(일본 지급여력비율=(지급여력기본액/(리스크총액×1/2))×100)